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.(수) 11:00 < 11.3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.(수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	책임자	과 장 최성준 (044-203-4850)
		담당자	주무관 오지연 (044-203-4853)

대학·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11.2(수)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·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.

< 통제기술 설명회 개요>

- **일시/장소**: '22.11.2(수) 12:00~14:00,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(카멜리아 홀)
- **참 석 자**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(주재), 국가정보원, 전략물자관리원 서울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
- **주요내용**: 대외무역법상 통제기술 현황 및 수출허가제도 설명

□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, 컴퓨터, 정보통신 보안 등 1,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,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□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(제32조의3)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,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,

○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,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국가정보원,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.4(금)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, 대학,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대외무역법상 전략기술 개요

□ (정의)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**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**를 위해 **제한이 필요한 물품**의 **제조·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** (대외무역법)

□ (수출통제) **수출통제체제**에서 합의된 품목·기술·SW에 대해 우리나라는 **▲대외무역법 및 시행령, ▲전략물자수출입고시**에 반영하여 **수출통제 中**

*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,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,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

<전략기술 및 4대 수출통제체제 개요>

구분	전략기술	4대 수출통제체제*	통제분야	설립 (韓가입)	회원국
근거법	대외무역법, 전략물자수출입고시	바세나르체제(WA)	재래식무기	'96년 ('96년)	42개
정의	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(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)	호주그룹(AG)	생화학무기	'85년 ('96년)	43개
		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)	미사일	'87년 ('01년)	35개
지정	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의결에 따라 매년 통제목록 생신	핵공급그룹(NSG)	핵무기	'78년 ('95년)	48개

* 4대 수출통제체제 이외 화학무기, 생물무기와 관련 협약도 포함

□ (수출허가) **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**에 따른 이전시 허가* 필요

*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,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필요

○ **교육·훈련·실연** 및 **전화·메일**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도 **포함**

<전략기술 수출허가 절차>

전략물자관리원	⇒	대상기관	⇒	산업통상자원부 (무역안보심사과)	⇒	산업통상자원부	⇒	수출
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전략물자(기술) 해당여부 판단		전략물자(기술)로 판정된 경우 수출허가 신청		수출자, 구매자, 최종 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		수출 허가		
전략기술 판정		**수출허가신청**		**수출허가 심사**		**결과통보**		